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902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제안사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의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의 신청

및 허가절차,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규정 신설(안 제21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4. ~ 2024. 4. 24.

○ 제출의견 :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의 개정¹⁾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이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에 유상운송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탁 근거를 함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관련 산·구법 대비표 (시행 '24.7.10.)

현 행	개 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은</u> <u>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u> 붙일 수 있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u> --- ----- . ----- <u>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u>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2호, 2024. 1. 9., 일부개정] [주요 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이하 생략-

나. 검토의견

■ 상위법 개정 배경

- 현행 법 제9조제1항2)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81조3)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영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특례 사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음

- 하지만, 법 제9조제3항4)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5)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노선을 운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

-
-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영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정운수면허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⁶⁾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허가권이 일부만 이양되어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중앙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특례의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관련 법을 개정함

■ 정의 관련(안 제2조)

- 현행 조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⁷⁾를 정의하기 위해 법 제7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법의 구체적인 항까지 규정하는 것보다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개정하여 전반적인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6)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영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범운영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이하 “시범운영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4조·5조)

- 서울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⁸⁾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시·도지사의 권한이 되는 유상운송 허가권에 대한 내용과 한정운수면허 발급·연장·정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밖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면허신청 관련(안 제11조)

- 현행 조례에서는 법 제9조제3항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¹⁰⁾의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
- 8)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을 조례에 인용함에 있어 세부적인 항과 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을 정비하고 법령명에 대한 약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자율주행 관련 유상운송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면허신청 등”을 “허가 또는 면허신청 등”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내용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등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¹¹⁾에 따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안 제12·13조)

- 현행 조례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¹²⁾ 하거나 면허기간 연장¹³⁾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¹⁴⁾에 따라 시·도지사 권한 이양이 예정되어 있는 유상운송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현행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각 항과 각 호에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차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현황 조사,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고 매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¹⁴⁾를 통해 계획 달성도, 규제효과 등 시범운행지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12)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높이기 위해 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연구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되나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추진해야 할 것임